

부산지방법원 2022. 7. 8 선고 2021나5838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래 담당변호사 이태환

피고, 피항소인 D

변 론 종 결 2022. 5. 27.

판 결 선 고 2022. 7. 8.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1. 9. 선고 2016가단337122 판결

환송전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9. 12. 선고 2018나43149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다276027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7,274,88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7,274,88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 및 환송전 원고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이 피고 및 환송전 피고 C, E(이하 ‘C, E’이라고만 한다)을 상대로 제기한 제1심에서, 제1심법원은 B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원고 및 B의 C, E에 대한 청구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 및 B이 피고, C, E을 상대로 각 패소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나 환송전 이 법원은 원고 및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 및 B이 다시 상고하였는데 상고심은 환송전 이 법원의 판결 중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부분만을 파기하여 이 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B의 상고 전부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는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환송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파기환송 부분에 한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C가 2014. 12. 24. 부산 남구 F 대 271.7㎡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대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15층 규모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다세대주택인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사실, 피고는 건축주인 C와 동업으로 이 사건 건물을 사실상 신축한 사실, 원고는 2014년 11월경부터 2016년 3월경까지 이 사건 건물의 신축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일하였는데 C 및 피고가 원고에게 10개월분의 급여 합계 40,000,000원(= 4,000,000원 × 10개월)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가 현장소장으로 일하는 기간 동안 C 및 피고를 대신하여 일반경비 2,274,880원, 내화판넬 공사비 6,000,000원, 간판설치 공사비 4,600,000원, 포장 및 보도블럭설치 공사비 4,400,000원 합계 17,274,880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피고는 2022. 5. 27. 이 법원 5회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급여 및 변상금으로 합계 57,274,880원(= 40,000,000원 + 17,274,88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16. 9. 2.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이라 한다) 및 구 소촉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법정이율인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현재의 소촉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정이율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재희, 판사 권현영, 판사 조윤정